

국제사법

[시행 2001. 7. 1] [법률 제 6465 호, 2001. 4. 7, 전부개정]

제 1 장 총칙

- **제 1 조 (목적)** 이 법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국제재판관할)**
 - ①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 ②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 1 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제 3 조 (본국법)**
 - ①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둘 이상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을 그 본국법으로 정한다. 다만, 그 국적중 하나가 대한민국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을 본국법으로 한다.

 - ② 당사자가 국적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국적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상거소(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하 "상거소지법"이라 한다)에 의하고,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 ③ 당사자가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지는 때에는 그 국가의 법 선택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법에 의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의 법에 의한다.

- **제 4 조 (상거소지법)** 당사자의 상거소지법(상거소지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상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의 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 **제 5 조 (외국법의 적용)** 법원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법의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적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6 조 (준거법의 범위)** 이 법에 의하여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외국법의 규정은 공법적 성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제 7 조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입법목적에 비추어 준거법에 관계없이 해당 법률관계에 적용되어야 하는 대한민국의 강행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제 8 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①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이 해당 법률관계와 근소한 관련이 있을 뿐이고, 그 법률관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국가의 법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9 조 (준거법 지정시의 반정(반정))** ①이 법에 의하여 외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준거법의 지정에 관한 법규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②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선택하는 경우
 2. 이 법에 의하여 계약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3.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4. 제 50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
 5. 제 6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적국법이 지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이 법의 지정 취지에 반하는 경우
- **제 10 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외국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규정의 적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명백히 위반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사람

- **제 11 조 (권리능력)** 사람의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 **제 12 조 (실종선고)** 법원은 외국인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민국에 그의 재산이 있거나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때,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할 수 있다.
- **제 13 조 (행위능력)** ① 사람의 행위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행위능력이 혼인에 의하여 확대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미 취득한 행위능력은 국적의 변경에 의하여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 **제 14 조 (한정치산 및 금치산선고)** 법원은 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선고를 할 수 있다.
- **제 15 조 (거래보호)** ① 법률행위를 행한 자와 상대방이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 동일한 국가안에 있는 경우에 그 행위자가 그의 본국법에 의하면 무능력자이더라도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국가의 법에 의하여 능력자인 때에는 그의 무능력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법률행위 당시 그의 무능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친족법 또는 상속법의 규정에 의한 법률행위 및 행위지 외의 국가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6 조 (법인 및 단체)** 법인 또는 단체는 그 설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제 3 장 법률행위

- **제 17 조 (법률행위의 방식)** ① 법률행위의 방식은 그 행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 행위지법에 의하여 행한 법률행위의 방식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하다.

③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때에는 그 국가중 어느 한 국가의 법이 정한 법률행위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④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있는 국가를 기준으로 제 2 항에 규정된 행위지법을 정한다.

⑤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은 물권 그 밖에登記하여야 하는 권리를 설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18 조 (임의대리)** ①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는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대리인의 행위로 인하여 본인이 제 3 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지의 여부는 대리인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대리인의 영업소가 없거나 영업소가 있더라도 제 3 자가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실제로 대리행위를 한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대리인이 본인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그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주된 영업소를 그의 영업소로 본다.

④본인은 제 2 항 및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리의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준거법의 선택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명시되거나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제 3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경우에만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⑤대리권이 없는 대리인과 제 3 자간의 관계에 관하여는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물권

□ **제 19 조 (물권의 준거법)** ①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물권 또는登記하여야 하는 권리는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②제 1 항에 규정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목적물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 **제 20 조 (운송수단)** 항공기에 관한 물권은 그 국적소속국법에 의하고, 철도차량에 관한 물권은 그 운행허가국법에 의한다.
- **제 21 조 (무기명증권)** 무기명증권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은 그 원인된 행위 또는 사실의 완성 당시 그 무기명증권의 소재지법에 의한다.
- **제 22 조 (이동중의 물건)** 이동중의 물건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그 목적지법에 의한다.
- **제 23 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채권·주식 그 밖의 권리 또는 이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담보대상인 권리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무기명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약정담보물권은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한다.
- **제 24 조 (지적재산권의 보호)**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그 침해지법에 의한다.

제 5 장 채권

- **제 25 조 (당사자 자치)** ①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 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 ②당사자는 계약의 일부에 관하여도 준거법을 선택할 수 있다.
 - ③당사자는 합의에 의하여 이 조 또는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체결후 이루어진 준거법의 변경은 계약의 방식의 유효성과 제 3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④모든 요소가 오로지 한 국가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그 외의 다른 국가의 법을 선택한 경우에 관련된 국가의 강행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
 - ⑤준거법 선택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의 성립 및 유효성에 관하여는 제 29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6 조 (준거법 결정시의 객관적 연결)** ①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은 그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당사자가 계약에 따라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을 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당사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계약이 당사자의 직업 또는 영업활동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양도계약의 경우에는 양도인의 이행
2.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물건 또는 권리를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3. 위임·도급계약 및 이와 유사한 용역제공계약의 경우에는 용역의 이행

③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제 27 조 (소비자계약)** ①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 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3.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로 하여금 외국에 가서 주문을 하도록 유도한 경우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은 제 26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방식은 제 17 조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는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소비자의 상대방이 소비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⑥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소비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 **제 28 조 (근로계약)** ①근로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②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계약은 제 26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하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는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근로계약의 경우에 근로자는 자신이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또는 최후로 일상적 노무를 제공하였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게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신이 일상적으로 어느 한 국가안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를 고용한 영업소가 있거나 있었던 국가에서도 사용자에게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근로계약의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는 근로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 또는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에서만 제기할 수 있다.

⑤근로계약의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합의는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분쟁이 이미 발생한 경우

2. 근로자에게 이 조에 의한 관할법원에 추가하여 다른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 **제 29 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①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을 경우 이 법에 의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준거법에 따라 판단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준거법에 따라 당사자의 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것이 모든 사정에 비추어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는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그의 상거소지법을 원용할 수 있다.

□ **제 30 조 (사무관리)** ①사무관리는 그 관리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다만, 사무관리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청구권은 그 채무의 준거법에 의한다.

□ **제 31 조 (부당이득)** 부당이득은 그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에 의한다. 다만, 부당이득이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기하여 행하여진 이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 **제 32 조 (불법행위)** ①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한다.

②불법행위가 행하여진 당시 동일한 국가안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③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④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성질이 명백히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그 범위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적절한 배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때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 33 조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당사자는 제 30 조 내지 제 32 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가 발생한 후 합의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을 그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그로 인하여 제 3 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34 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①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간의 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능성, 채무자 및 제 3 자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은 양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은 채무인수에 이를 준용한다.

□ **제 35 조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 ①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은 그 이전의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 다만,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채무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된다.

②제 1 항과 같은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채권의 준거법에 의한다.

제 6 장 친족

□ **제 36 조 (혼인의 성립)** ①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

②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 **제 37 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 **제 38 조 (부부재산제)** ①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부부가 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범중 어느 것을 선택한 경우에는 부부재산제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다만, 그 합의는 일자와 부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부부중 일방이 국적을 가지는 법

2. 부부중 일방의 상거소지법

3.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③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부부재산제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제 3 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④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 제 3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 39 조 (이혼)** 이혼에 관하여는 제 37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부부중 일방이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 **제 40 조 (혼인중의 친자관계)** ①혼인중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자)의 출생 당시 부부중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제 1 항의 경우 부(부)가 자(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 **제 41 조 (혼인 외의 친자관계)** ①혼인 외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자)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자)의 출생 당시 부(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

②인지는 제 1 항이 정하는 법 외에 인지 당시 인지자의 본국법에 의할 수 있다.

③제 1 항의 경우 부(부)가 자(자)의 출생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보고, 제 2 항의 경우 인지자가 인지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 **제 42 조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준정(준정))** ①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그 지위가 변동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그 요건인 사실의 완성 당시 부(부) 또는 모의 본국법 또는 자(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②제 1 항의 경우 부(부) 또는 모가 그 요건인 사실이 완성되기 전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 당시 본국법을 그의 본국법으로 본다.

□ **제 43 조 (입양 및 파양)** 입양 및 파양은 입양 당시 양친(양친)의 본국법에 의한다.

□ **제 44 조 (동의)** 제 41 조 내지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친자관계의 성립에 관하여 자(자)의 본국법이 자(자) 또는 제 3 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할 때에는 그 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 **제 45 조 (친자간의 법률관계)**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 **제 46 조 (부양)** ①부양의 의무는 부양권리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 다만, 그 법에 의하면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한다.

②대한민국에서 이혼이 이루어지거나 승인된 경우에 이혼한 당사자간의 부양의무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이혼에 관하여 적용된 법에 의한다.

③방계혈족간 또는 인척간의 부양의무의 경우에 부양의무자는 부양권리자의 청구에 대하여 당사자의 공통 본국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이 없는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④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양의무자가 대한민국에 상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 **제 47 조 (그 밖의 친족관계)** 친족관계의 성립 및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 **제 48 조 (후견)** ①후견은 피후견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대한민국에 상거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후견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

1. 그의 본국법에 의하면 후견개시의 원인이 있더라도 그 후견사무를 행할 자가 없거나 후견사무를 행할 자가 있더라도 후견사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
2. 대한민국에서 한정치산 또는 금치산을 선고한 경우
3. 그 밖에 피후견인을 보호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제 7 장 상속

□ **제 49 조 (상속)** ①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 **제 50 조 (유언)** ①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는 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의한다.

③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상거소지법
3. 유언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제 8 장 어음·수표

- **제 51 조 (행위능력)** ①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의 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그 국가의 법이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다른 국가의 법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면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에서 서명을 하고 그 국가의 법에 의하여 능력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 **제 52 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① 수표지급인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지급지법에 의한다.

② 지급지법에 의하면 지급인이 될 수 없는 자를 지급인으로 하여 수표가 무효인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없는 다른 국가에서 행한 서명으로부터 생긴 채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 53 조 (방식)** ①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은 서명지법에 의한다. 다만, 수표행위의 방식은 지급지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도 그 후 행위의 행위지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그 전 행위의 무효는 그 후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행위의 방식이 행위지법에 의하면 무효인 경우에도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적법한 때에는 다른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 **제 54 조 (효력)** ① 환어음의 인수인과 약속어음의 발행인의 채무는 지급지법에 의하고, 수표로부터 생긴 채무는 서명지법에 의한다.

② 제 1 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의 환어음 및 약속어음에 의한 채무는 서명지법에 의한다.

③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소구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모든 서명자에 대하여 발행지법에 의한다.

- **제 55 조 (원인채권의 취득)** 어음의 소지인이 그 발행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지법에 의한다.

□ **제 56 조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① 환어음의 인수를 어음 금액의 일부에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지급지법에 의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은 약속어음의 지급에 준용한다.

□ **제 57 조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에 관한 거절증서의 방식, 그 작성기간 및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또는 보전에 필요한 그 밖의 행위의 방식은 거절증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곳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행하여야 하는 곳의 법에 의한다.

□ **제 58 조 (상실 및 도난)**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상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 행하여야 하는 절차는 지급지법에 의한다.

□ **제 59 조 (수표의 지급지법)** 수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수표의 지급지법에 의한다.

1. 수표가 일람출급을 요하는지 여부, 일람후 정기출급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선일자수표의 효력
2. 제시기간
3. 수표에 인수, 지급보증, 확인 또는 사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기재의 효력
4. 소지인이 일부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일부지급을 수락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5. 수표에 횡선을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수표에 “계산을 위하여”라는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구의 기재의 효력. 다만, 수표의 발행인 또는 소지인이 수표면에 “계산을 위하여”라는 문구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이 있는 문구를 기재하여 현금의 지급을 금지한 경우에 그 수표가 외국에서 발행되고 대한민국에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일반횡선수표의 효력이 있다.
6. 소지인이 수표자금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및 그 권리의 성질
7. 발행인이 수표의 지급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지급정지를 위한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
8.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채무자에 대한 소구권 보전을 위하여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선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제 9 장 해상

□ 제 60 조 (해상) 해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선적국법에 의한다.

1. 선박의 소유권 및 저당권, 선박우선평권 그 밖의 선박에 관한 물권
2. 선박에 관한 담보물권의 우선순위
3.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
4. 선박소유자·용선자·선박관리인·선박운항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책임제한의 범위
5. 공동해손
6. 선장의 대리권

□ 제 61 조 (선박충돌) ①개항·하천 또는 영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그 충돌지법에 의한다.

②공해에서의 선박충돌에 관한 책임은 각 선박이 동일한 선적국에 속하는 때에는 그 선적국법에 의하고, 각 선박이 선적국을 달리하는 때에는 가해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 제 62 조 (해양사고구조) 해양사고구조로 인한 보수청구권은 그 구조행위가 영해에서 있는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하고, 공해에서 있는 때에는 구조한 선박의 선적국법에 의한다.

□ □ 부칙 <제 6465 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준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이 법 시행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섭외사법에 의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후에 계속(계속)되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 이후의 법률관계에 한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른 법률의 개정) 중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9 조제 1 항중 “섭외사법”을 “국제사법”으로 한다.